

 <b>질병관리청</b>		<h1>보도참고자료</h1>		
배 포 일		2021. 3. 13. (총 26매)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이 선 규		전 화
	담당자	최 상 미, 최 은 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팀 장	장 수 경		
	담당자	정 상 균		
				043-719-9381
				043-719-9365
				043-913-2321
				043-913-2323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4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5,176명(해외유입 7,28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4,11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776건(확진자 6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6,894건, 신규 확진자는 총 49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82명으로 총 86,625명(91.0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88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2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67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13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74	138	17	9	26	2	1	1	0	160	18	16	9	2	1	12	61	1
누계	87,893	28,878	3,267	8,558	4,450	2,038	1,149	995	218	24,227	1,932	1,868	2,367	1,156	831	3,190	2,197	572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13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6	1	7	2	5	1	0	6	10	6	10
누계	7,283	41 (0.6%)	3,246 (44.6%)	1,251 (17.2%)	2,365 (32.5%)	357 (4.9%)	23 (0.3%)	3,043 (41.8%)	4,240 (58.2%)	3,921 (53.8%)	3,362 (46.2%)

\*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일본 1명, 카자흐스탄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1명(1명), 유럽 : 헝가리 1명, 네덜란드 1명, 아메리카 : 미국 5명(3명),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12.(금) 0시 기준	85,743	7,281	126	1,662
3.13.(토) 0시 기준	86,625	6,884	112	1,667
변동	(+)882	(-)397	(-)14	(+)5

\* 3.12일 0시부터 3.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13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28.3명), 수도권에서 324명(68.4%) 비수도권에서는 150명(31.6%)이 발생하였다.

(주간 : 3.7일~3.13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13일(0시 기준)	474	324	26	5	21	79	18	1
주간 일 평균	428.3	313.9	26.3	16.4	12.1	41.1	16.1	2.3
주간 총 확진자 수	2,998	2,197	184	115	85	288	113	16

○ 수도권

(주간 : 3.7일~3.13일, 단위 : 명)

구분	3.7.	3.8.	3.9.	3.10.	3.11.	3.12.	3.1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23	240	299	354	333	324	324	313.9	2,197
서울	127	97	98	132	137	138	138	123.9	867
인천	27	15	20	23	18	29	26	22.6	158
경기	169	128	181	199	178	157	160	167.4	1,172

- (서울 도봉구 아동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가족 13명(지표포함, +6), 종사자 5명, 이용자 4명, 기타 1명

- (서울 성동구 교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교인 12명(지표포함, +4), 가족 5명(+2), 지인 2명, 기타 1명

- (서울 강동구 병원 관련)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간병인 2명(지표포함), 환자 4명

- (서울 강동구 고등학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학생 19명(지표포함, +2), 가족 5명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가족 및 직장 관련)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동료 및 지인 4명

- (경기 화성시 물류센터 관련) 3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직원 12명(지표포함)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요양원 관련) 3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이용자 9명(지표포함), 직원 2명

## ○ 충청권

(주간 : 3.7일~3.13일, 단위 : 명)

구분	3.7.	3.8.	3.9.	3.10.	3.11.	3.12.	3.1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7	35	36	27	11	32	26	26.3	184
대전	1	-	1	3	1	-	1	1.0	7
세종	2	1	-	-	-	2	-	0.7	5
충북	8	20	21	18	6	27	16	16.6	116
충남	6	14	14	6	4	3	9	8.0	56

- (충남 홍성군 금속제조업체 관련) 3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종사자 9명(지표포함)

○ 경북권

(주간 : 3.7일~3.13일, 단위 : 명)

구분	3.7.	3.8.	3.9.	3.10.	3.11.	3.12.	3.1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9	8	5	5	14	13	21	12.1	85
대구	8	6	3	1	4	4	9	5.0	35
경북	11	2	2	4	10	9	12	7.1	50

- (대구 중구 가족/체육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4	가족 4명(지표포함)
② 체육시설 관련	12(+3)	종사자 2명, 방문자 7명(+1), 가족 2명(+1), 동료 1명(+1)

- (경북 구미시 사업장 관련) 3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1명
- (경북 고령군 제조업 관련) 외국인근로자 선제검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4)

○ 경남권

(주간 : 3.7일~3.13일, 단위 : 명)

구분	3.7.	3.8.	3.9.	3.10.	3.11.	3.12.	3.1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11	15	31	35	43	74	79	41.1	288
부산	6	12	19	7	13	14	17	12.6	88
울산	2	3	11	21	23	4	1	9.3	65
경남	3	-	1	7	7	56	61	19.3	135

- (부산 부산진구 복지관 관련) 3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1명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 (구분) 이용객 27명(지표포함), 가족 15명(+2), 기타 6명(+1)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4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3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8명(지표포함, 목욕탕방문자 2명 포함), 지인 1명, 종사자 및 종사자의 가족 5명, 방문자 78명(+48), 방문자의 가족 1명

- (경남 남해군 가족/지인 관련) 3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4명

### ○ 강원권

(주간 : 3.7일~3.13일, 단위 : 명)

구분	3.7.	3.8.	3.9.	3.10.	3.11.	3.12.	3.1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10	10	13	20	30	12	18	16.1	113

- (강원 평창군 숙박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숙박시설 관련	15(+4)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7명(+4)
② 직장 관련	13	동료 5명, 가족 2명, 지인 4명, 기타 2명

\* (추정감염경로) 숙박시설 종사자 → 직장 동료/가족 → 지인 및 기타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13일 0시 기준 신규로 35,684명이 추가 접종받아 583,658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73.7%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58,299명, 화이자 백신 25,359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13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5,684	9,635	2,748	1,435	2,050	1,060	1,210	471	85	9,011	1,336	569	769	636	1,608	1,468	1,236	357
누계	583,658	94,777	45,640	28,813	30,903	25,026	17,244	10,150	1,166	126,404	18,710	16,826	26,238	26,914	30,224	32,292	46,594	5,737

\* 2월 26일 2월 27일 3월 2일~3월 11일 접종자 1,697명이 3월 12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12)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6,760명(86.6%), 요양시설은 83,727명(77.1%), 1차 대응요원은 41,152명(54.6%),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56,660명(74.2%),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25,359명(43.7%)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 【접종기관·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13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792,267	141,040	62,672	41,242	44,663	29,690	24,932	14,811	2,263	170,579	25,065	23,185	32,583	32,955	38,128	43,298	56,224	8,937
	접종자	583,658	94,777	45,640	28,813	30,903	25,026	17,244	10,150	1,166	126,404	18,710	16,826	26,238	26,914	30,224	32,292	46,594	5,737
	접종률	73.7	67.2	72.8	69.9	69.2	84.3	69.2	68.5	51.5	74.1	74.6	72.6	80.5	81.7	79.3	74.6	82.9	64.2
요양병원	대상자	204,110	17,145	21,282	8,754	10,833	8,896	6,087	4,774	342	47,470	3,959	6,197	9,350	9,831	12,175	15,169	20,958	888
	접종자	176,760	13,645	19,016	7,437	9,254	8,051	5,376	4,194	325	39,876	3,255	5,566	8,409	8,993	10,954	12,809	18,819	781
	접종률	86.6	79.6	89.4	85.0	85.4	90.5	88.3	87.9	95.0	84.0	82.2	89.8	89.9	91.5	90.0	84.4	89.8	88.0
요양시설	대상자	108,584	7,740	3,723	4,607	7,615	2,083	3,800	1,250	368	32,390	5,647	5,501	6,208	5,068	5,710	7,665	6,718	2,491
	접종자	83,727	6,588	3,387	3,712	5,540	1,993	2,448	1,000	197	21,156	4,242	4,323	5,661	4,585	4,969	5,745	6,051	2,130
	접종률	77.1	85.1	91.0	80.6	72.8	95.7	64.4	80.0	53.5	65.3	75.1	78.6	91.2	90.5	87.0	75.0	90.1	85.5
1차 대응요원	대상자	75,392	10,204	4,024	1,983	4,724	1,534	1,474	1,233	583	12,409	4,416	3,434	6,217	4,395	6,364	6,005	4,978	1,415
	접종자	41,152	4,881	2,315	1,069	1,773	1,007	946	931	453	5,490	2,123	2,064	4,563	2,904	2,998	3,090	3,747	798
	접종률	54.6	47.8	57.5	53.9	37.5	65.6	64.2	75.5	77.7	44.2	48.1	60.1	73.4	66.1	47.1	51.5	75.3	56.4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예방접종이상이 신고된 기관	대상자	346,126	92,646	29,656	22,975	13,097	16,087	10,166	5,118	223	68,946	9,843	5,456	9,279	12,559	13,096	12,560	22,069	2,350
	접종자	256,660	58,913	20,677	15,677	11,187	13,225	8,474	3,993	191	54,850	7,928	4,770	6,415	10,339	10,908	9,954	17,131	2,028
	접종률	742	63.6	69.7	68.2	85.4	82.2	83.4	78.0	85.7	79.6	80.5	87.4	69.1	82.3	83.3	79.3	77.6	86.3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58,055	13,305	3,987	2,923	8,394	1,090	3,405	2,436	747	9,364	1,200	2,597	1,529	1,102	783	1,899	1,501	1,793
	접종자	25,359	10,750	245	918	3,149	750	0	32	0	5,032	1,162	103	1,190	93	395	694	846	0
	접종률	43.7	80.8	6.1	31.4	37.5	68.8	0.0	1.3	0.0	53.7	96.8	4.0	77.8	8.4	50.4	36.5	56.4	0.0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 (3.13일 0시 기준)는 총 8,322건\*(신규 674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8,227건(신규 660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였으며,

- 73건(신규 12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7건(신규 2건)의 중증 의심 사례, 15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3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구분	접종자수 (누계)	합계	일반 <sup>1)</sup>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sup>2)</sup>	중증 의심사례 <sup>3)</sup>	사망사례	
전체	신규	583,658	674	660	12	2	0
	누계		8,322	8,227	73	7	15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558,299	658	645	11	2	0
	누계		8,225	8,134	69	7	15
화이자	신규	25,359	16	15	1	-	-
	누계		97	93	4	-	-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72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6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5.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6. 「감염병 보도준칙」 (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1 일일 확진자 현황 (3.13. 0시 기준, 95,17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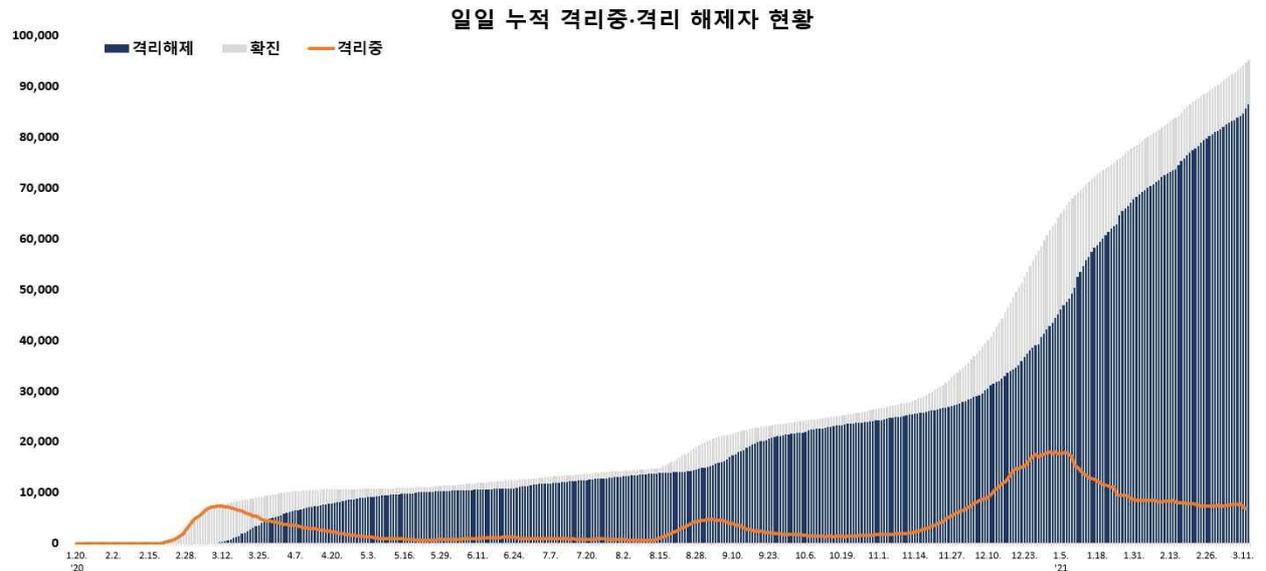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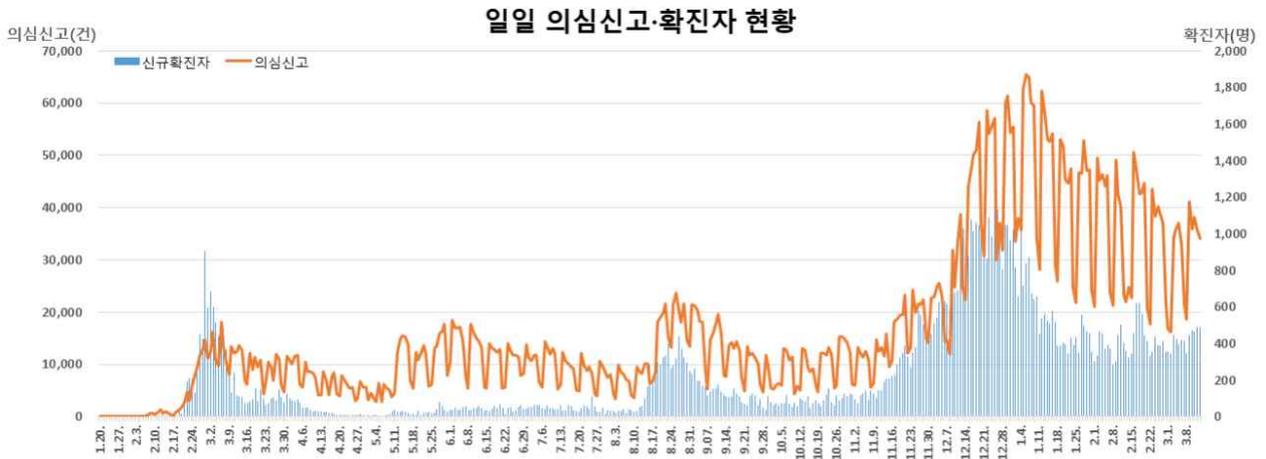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12.(금) 0시 기준	7,012,664	94,686	85,743	7,281	1,662	68,738	6,849,240
3.13.(토) 0시 기준	7,046,782	95,176	86,625	6,884	1,667	67,874	6,883,732
변동	+34,118	+490	+882	-397	+5	-864	+34,492

\* 3.12일 0시부터 3.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3. 0시 기준, 95,17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38	2	29,837	(31.35)	306.54
부산	17	0	3,404	(3.58)	99.77
대구	9	0	8,715	(9.16)	357.69
인천	26	0	4,688	(4.93)	158.59
광주	2	1	2,173	(2.28)	149.17
대전	1	0	1,203	(1.26)	81.61
울산	1	0	1,089	(1.14)	94.94
세종	0	0	244	(0.26)	71.28
경기	160	4	25,793	(27.10)	194.66
강원	18	0	2,007	(2.11)	130.28
충북	16	0	1,962	(2.06)	122.67
충남	9	0	2,533	(2.66)	119.34
전북	2	0	1,264	(1.33)	69.55
전남	1	0	901	(0.95)	48.32
경북	12	2	3,361	(3.53)	126.23
경남	61	1	2,354	(2.47)	70.03
제주	1	0	605	(0.64)	90.20
검역	0	6	3,043	(3.20)	-
총합계	474	16	95,176	(100)	183.57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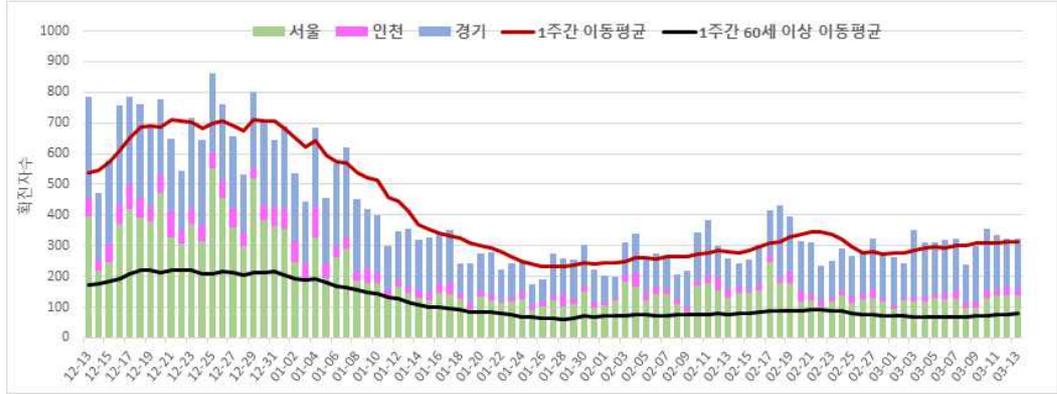
구분	합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6,884	2,237	195	79	251	82	15	84	15	2,485	153	224	111	71	72	113	168	39	490
격리해제	86,625	27,197	3,096	8,421	4,382	2,070	1,173	968	228	22,793	1,812	1,678	2,387	1,137	821	3,176	2,172	565	2,549
사망	1,667	403	113	215	55	21	15	37	1	515	42	60	35	56	8	72	14	1	4
합계	95,176	29,837	3,404	8,715	4,688	2,173	1,203	1,089	244	25,793	2,007	1,962	2,533	1,264	901	3,361	2,354	605	3,043

\* 3.12일 0시부터 3.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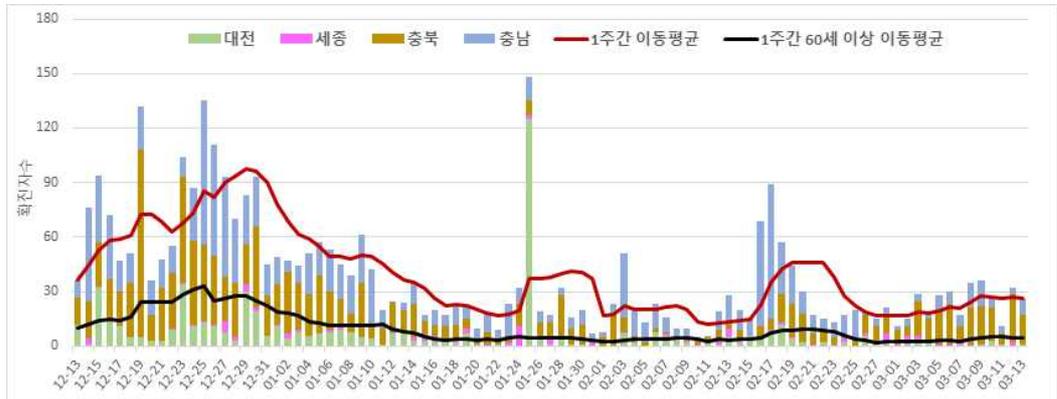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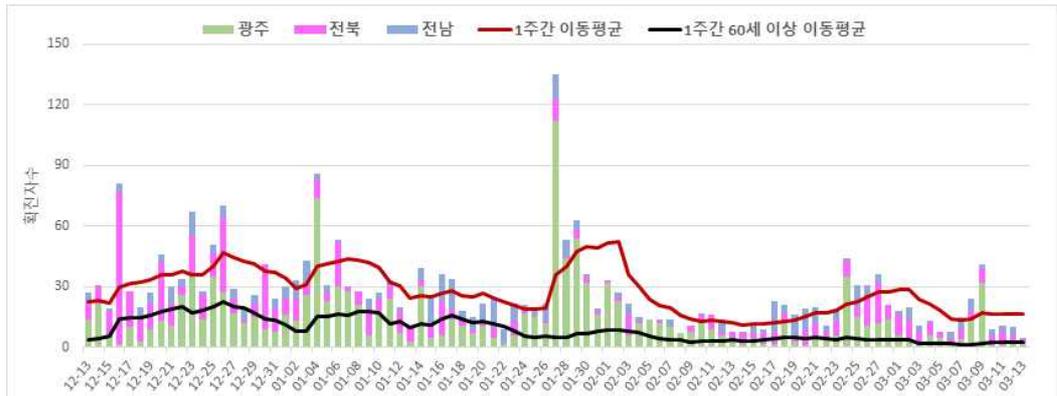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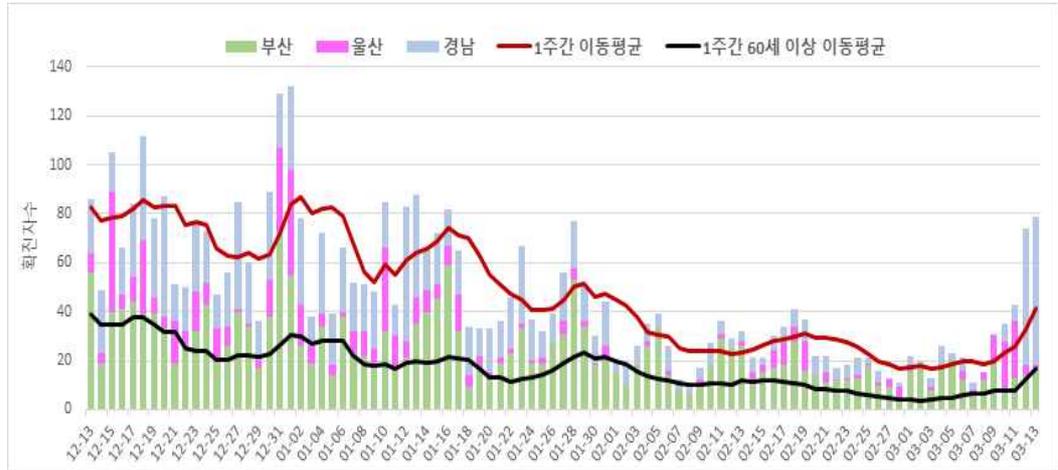


경북권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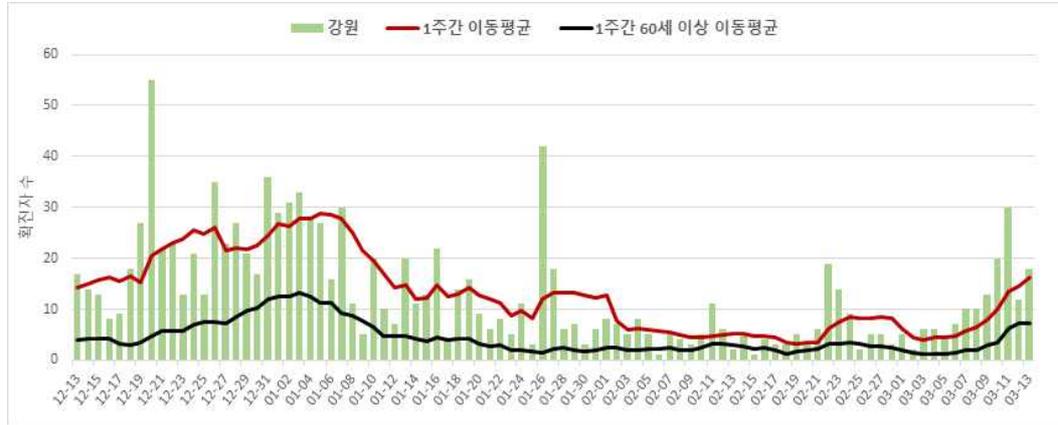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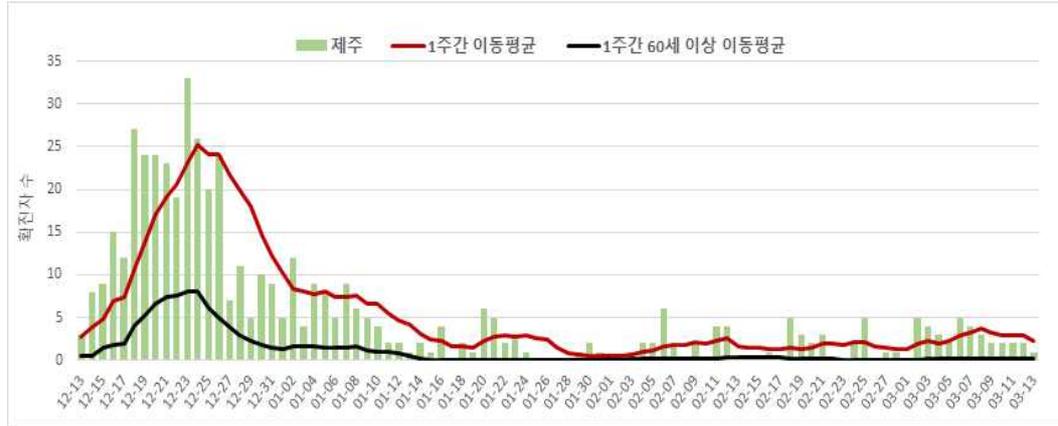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③ **성별 · 연령별 확진자 현황** (3.13. 0시 기준, 95,176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88 (100)	95,176 (100)	183.57
성별	남성	251 (51.43)	47,117 (49.51)	182.18
	여성	237 (48.57)	48,059 (50.49)	184.95
연령	80세 이상	15 (3.07)	4,550 (4.78)	239.57
	70-79	43 (8.81)	7,163 (7.53)	198.58
	60-69	75 (15.37)	14,803 (15.55)	233.33
	50-59	73 (14.96)	17,614 (18.51)	203.23
	40-49	68 (13.93)	13,716 (14.41)	163.49
	30-39	75 (15.37)	12,606 (13.24)	178.93
	20-29	69 (14.14)	14,316 (15.04)	210.33
	10-19	38 (7.79)	6,463 (6.79)	130.82
0-9	32 (6.56)	3,945 (4.14)	95.0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④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13.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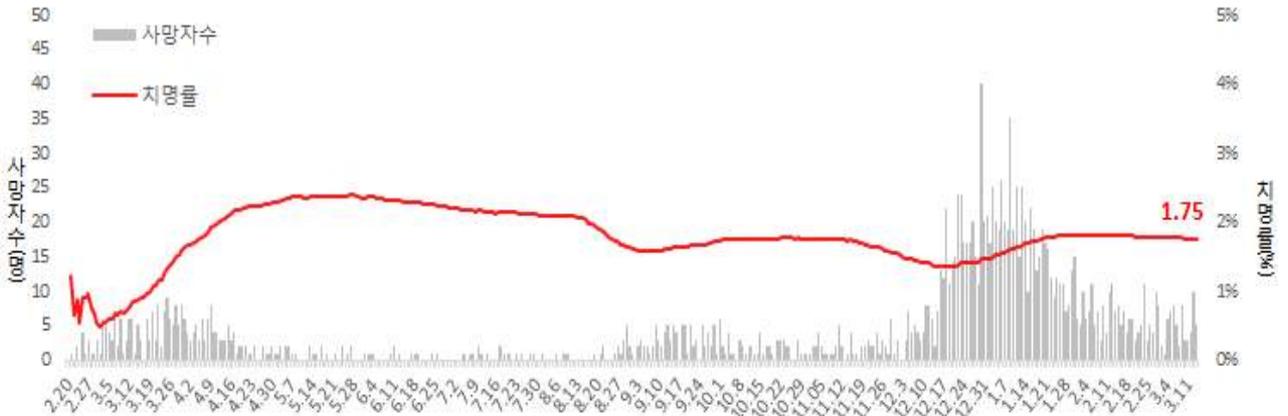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5 (100)	1,667 (100)	1.75
성별	남성	3 (60.00)	829 (49.73)	1.76
	여성	2 (40.00)	838 (50.27)	1.74
연령	80세 이상	2 (40.00)	938 (56.27)	20.62
	70-79	3 (60.00)	463 (27.77)	6.46
	60-69	0 (0.00)	189 (11.34)	1.28
	50-59	0 (0.00)	55 (3.30)	0.31
	40-49	0 (0.00)	14 (0.84)	0.10
	30-39	0 (0.00)	7 (0.42)	0.06
	20-29	0 (0.00)	1 (0.06)	0.01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계	135	131	135	129	140	135	136	134	128	128	123	127	126	112

구분	위중증	( % )
계	112	( 100.0 )
80세 이상	23	( 20.5 )
70-79세	45	( 40.2 )
60-69세	30	( 26.8 )
50-59세	11	( 9.8 )
40-49세	1	( 0.9 )
30-39세	2	( 1.8 )
20-29세	0	( 0.0 )
10-19세	0	( 0.0 )
0-9세	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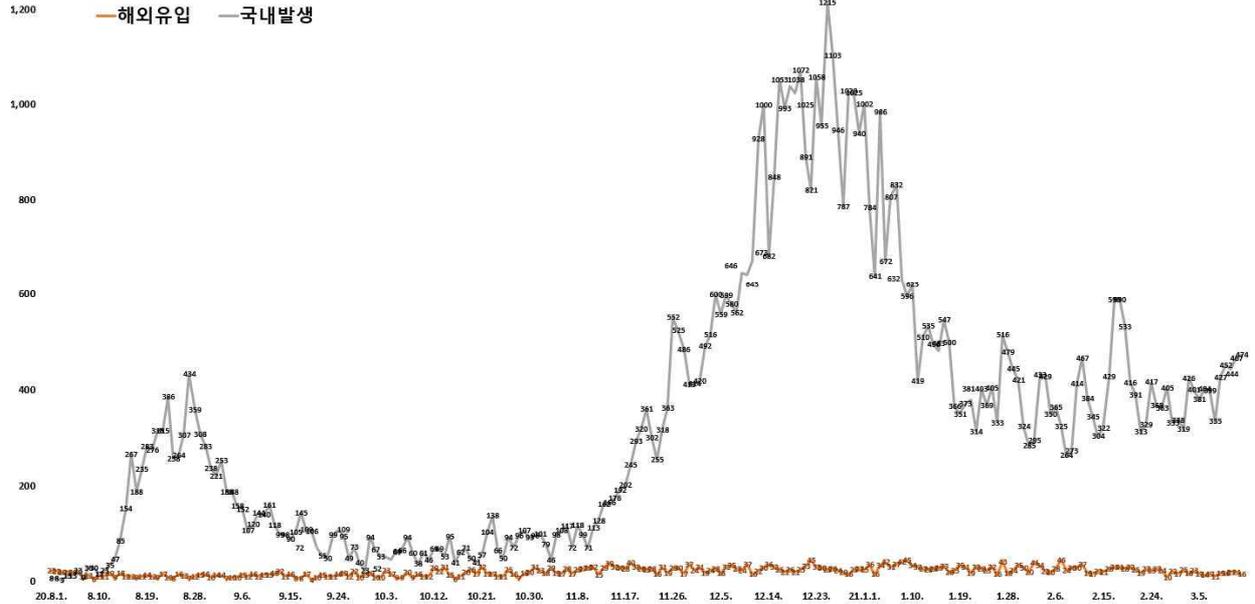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 감염경로

###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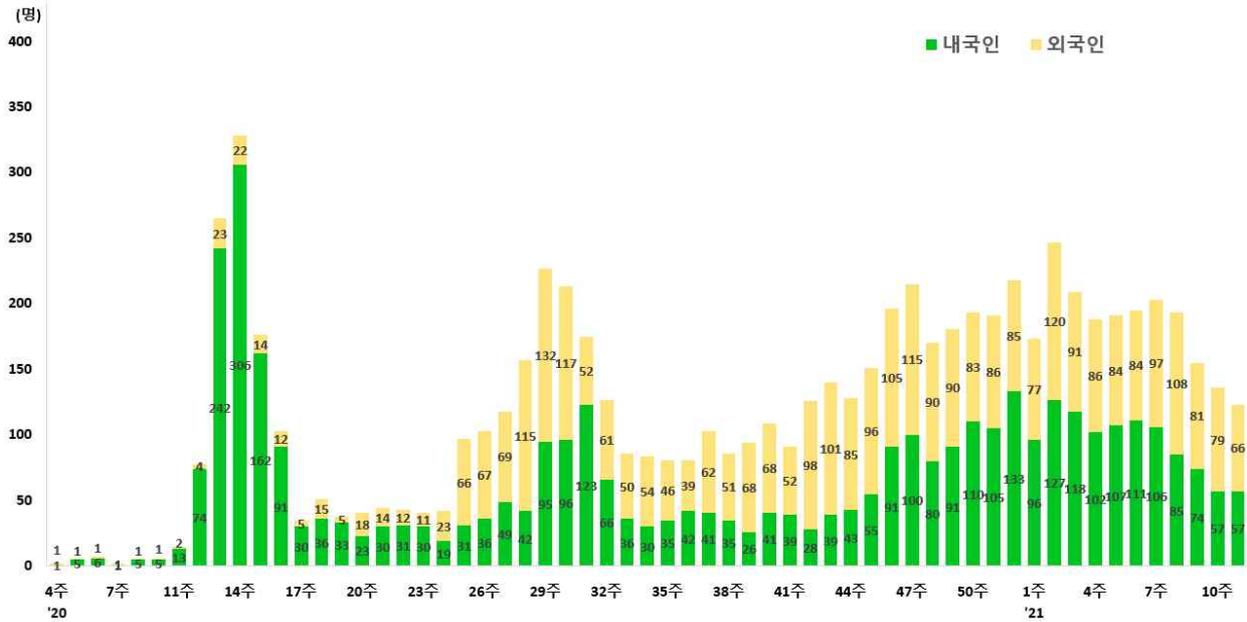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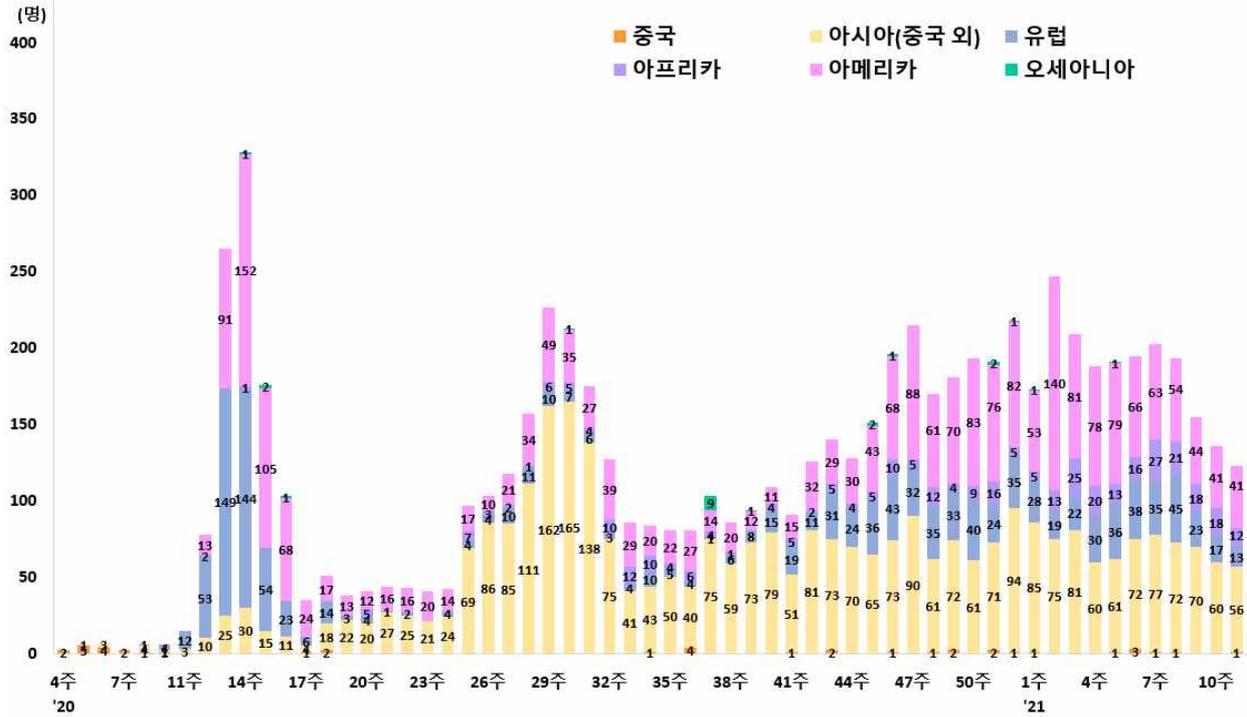
(단위: 명)



### < 최근 2주간 ('21.2.28일 0시~'21.3.13일 0시까지 신고된 5,859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서울	29,837	959	11,242	8	11,132	102	9,737	7,899	140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구광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노랑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 충북 과천시 음식점/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8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타공장 관련(200명)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67명)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89명)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113명)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79명) • 경북 의성군 기적모임/의성군 유치원 관련(114명)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93명)
부산	3,404	137	2,103	12	2,034	57	693	471	17	
대구	8,715	157	6,467	4,512	1,948	7	1,122	969	9	
인천	4,688	238	2,134	2	2,122	10	1,513	803	26	
광주	2,173	135	1,743	9	1,728	6	146	149	3	
대전	1,203	54	643	2	640	1	316	190	1	
울산	1,089	94	782	16	761	5	132	81	1	
세종	244	26	119	1	117	1	50	49	0	
경기	25,793	1,566	10,359	29	10,251	79	8,599	5,269	164	
강원	2,007	75	1,120	17	1,102	1	531	281	18	
충북	1,962	94	1,078	6	1,065	7	492	298	16	
충남	2,533	166	1,336	0	1,335	1	623	408	9	
전북	1,264	108	905	1	903	1	127	124	2	
전남	901	70	633	1	621	11	107	91	1	
경북	3,361	171	2,346	565	1,777	4	463	381	14	
경남	2,354	157	1,483	33	1,417	33	409	305	62	
제주	605	33	386	0	385	1	106	80	1	
검역	3,043	3,043	0	0	0	0	0	0	6	
합계	95,176 (%)	7,283 (7.7)	44,879 (47.2)	5,214 (5.5)	39,338 (41.3)	327 (0.3)	25,166 (26.4)	17,848 (18.8)	490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3.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소 수 (개소) <sup>1)</sup>	검사(건)					확진자(명)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 <sup>2)</sup>	
신규	0	32,776	32,729	0	47	0	68
서울	0	12,063	12,034	0	29	0	24
경기	0	18,168	18,151	0	17	0	42
인천	0	2,545	2,544	0	1	0	2
누계	100	2,539,584	2,517,331	4,235	17,970	48 <sup>3)</sup>	6,823
서울	26	1,098,844	1,090,727	1,485	6,612	20	3,296
경기	68	1,252,043	1,238,192	2,719	11,105	27	3,134
인천	6	188,697	188,412	31	253	1	393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7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7.~3.13.)

구분	3.7.	3.8.	3.9.	3.10.	3.11.	3.12.	3.13.	주간누계	총 누계
계	42,313	33,875	69,382	63,851	68,025	64,131	66,894	408,471	9,586,36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sup>1)</sup>	21,183	18,683	41,175	35,900	38,101	35,679	34,118	224,839	7,046,78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sup>2)</sup>	21,130	15,192	28,207	27,951	29,924	28,452	32,776	183,632	2,539,584
신규 확진자 수(명)	416	346	446	470	465	488	490	3,121	95,176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59	50	65	76	82	75	68	475	6,82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붙임 2 |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 누적발생 81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sup>1)</sup>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미국	28,940,137	525,495	60,210	1,509	1.82	8,743.24
인도	11,308,846	158,306	23,285	117	1.40	819.48
브라질	11,202,305	270,656	79,876	2,286	2.42	5,269.19
러시아	4,370,617	91,220	9,794	486	2.09	2,995.63
영국	4,241,681	125,168	6,753	181	2.95	6,246.95
프랑스	3,921,613	89,342	27,166	265	2.28	6,005.53
스페인	3,178,356	72,085	2,874	21	2.27	6,791.36
이탈리아	3,149,017	101,184	25,649	373	3.21	5,204.99
터키	2,835,989	29,290	14,046	63	1.03	3,364.16
독일	2,545,781	73,062	12,834	252	2.87	3,037.92
콜롬비아	2,285,960	60,773	3,588	97	2.66	4,491.08
아르헨티나	2,177,898	53,493	8,204	134	2.46	4,818.36
멕시코	2,144,558	192,488	6,674	699	8.98	1,663.74
폴란드	1,868,297	46,724	18,873	351	2.50	4,942.58
이란	1,723,470	61,016	8,308	88	3.54	2,051.75
남아프리카공화국	1,525,648	51,110	1,474	95	3.35	2,572.76
우크라이나	1,438,468	27,915	12,946	230	1.94	3,291.69
인도네시아	1,403,722	38,049	5,144	117	2.71	513.24
페루	1,387,457	48,323	7,434	160	3.48	4,204.42
체코	1,376,998	22,865	11,274	241	1.66	12,869.14
네덜란드	1,138,796	15,998	5,380	50	1.40	6,659.63
캐나다	896,739	22,335	3,221	31	2.49	2,378.62
칠레	873,512	21,362	5,563	156	2.45	4,573.36
루마니아	845,352	21,252	5,236	96	2.51	4,402.88
포르투갈	812,575	16,635	627	18	2.05	7,966.42
필리핀	607,048	12,608	3,740	63	2.08	553.88
방글라데시	554,156	8,502	2,069	13	1.53	336.46
일본	444,289	8,451	1,288	49	1.90	351.22
헝가리	498,183	16,627	9,011	130	3.34	5,135.91
네팔	275,070	3,012	97	0	1.09	945.26
미얀마	142,114	3,201	41	1	2.25	261.24
중국	90,034	4,636	7	0	5.15	6.26
키르기스스탄	86,755	1,480	63	4	1.71	1,334.69
우즈베키스탄	80,392	622	45	0	0.77	239.98
태국	26,679	85	81	0	0.32	38.22
베트남	2,535	35	6	0	1.38	2.61
대한민국	95,176	1,667	490	5	1.75	183.62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li> <li>*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li> <li>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li> </ul>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li> <li>▶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li> <li>*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li> <li>▶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li> </ul>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li> <li>▶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li> <li>▶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li> <li>▶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li> </ul>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li>▶ <b>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b></li> </ul>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li> </ul>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li> <li>▶ <b>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b></li> <li>▶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li> <li>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b>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b></li> <li>*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b>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b></li> </ul>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b></li> <li>▶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li> <li>▶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li> <li>▶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li> <li>▶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li> <li>▶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li> <li>▶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ul>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b>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b></li> </ul>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b>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b></li> </ul>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ul>
오락실·멀티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b></li> <li>▶ 마스크 착용</li> </ul>
마트·상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li>▶ 주기적 환기·소독</li> </ul>
<b>③ 기타 다중이용시설</b>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b></li> <li>▶ <b>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b></li> <li>▶ <b>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b></li> <li>▶ <b>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b></li> </ul>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li> <li>▶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li> <li>▶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li> </ul>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b>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b>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li> <li>▶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li> </ul>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b></li> <li>▶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li> <li>*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li> </ul>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li> <li>▶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li> <li>*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li> <li>-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li> <li>-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li> <li>▶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li> <li>*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li> </ul>

##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li> <li>*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li> <li>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li> <li>-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li> </ul>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li> <li>▶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li> </ul>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li> <li>▶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li> <li>▶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li> <li>▶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li> </ul>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ul>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li> </ul>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섭취 금지</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li> </ul>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li> <li>▶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b></li> <li>*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li> </ul>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li> </ul>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li> <li>▶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li> <li>▶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li> <li>▶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li> <li>▶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li> <li>▶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li> <li>▶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b>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b>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로는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b>② 기타 다중이용시설</b>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b>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b>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없는  
건강상태가 좋을 때  
예방접종 받기



15~30분  
예방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15~30분 머물며  
이상반응 관찰하기



예방접종 후 최소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최소 3일간 주의 깊게 관찰하기



39도 이상 고열이나 알레르기  
증상(두드러기, 발진 등) 및 이상반응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의사의 진찰 받기

\*접종 부위 통증, 부기, 오한, 발열, 메스꺼움, 피로감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수일 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킵니다

☑️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19예방접종.kr](https://www.kdca.go.kr/immunization)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021.03.08.

##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중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중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학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등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